

농식품부가 구제역 부분매물 이동제한 해제절차를 포함한 NSP양성 농장 방역조치사항을 알려온 바, 전국 회원농가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어 목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◎ NSP양성축 발견시, 추가혈청검사(NSP) / 항원검사(바이러스) / 환경검사 실시

→ 항원(바이러스)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동제한 해제

→ 항원(바이러스)이 존재하면 해당개체 매몰처분 및 이동제한(3주), 재검사

가. 부분매물농장 이동제한 해제절차

- ① 임상검사(전두수) 및 NSP 표본혈청검사(농장당 16두이상)
- ② 표본혈청검사 음성 판정시, 농장 환경검사를 추가 실시
  - 환경검사(분변, 사료통, 축사바닥 등에서 시료채취하여 항원검사)에서 바이러스 검출시, 3주간 이동제한후 재검사(임상/NSP표본혈청/환경)
- ③ 환경검사 음성판정시, 이동제한 해제

나. NSP 양성축 발견시(표본혈청검사/정기예찰 등) 방역조치사항

→ 해당농장에 이동제한 조치(또는 유지) 후

- ① 전두수 NSP혈청검사 실시
- ② NSP 양성축(표본검사 포함)에 대해 개체별 항원(바이러스)검사 실시
- ③ -1. 항원 검출시, 해당개체 매몰처분 및 해당농장 이동제한 유지(마지막 매물 후 3주)
- ③ -2. 항원 미검출시, 농장내 환경검사 실시하여 음성판정시 이동제한 해제
  - ※ 환경검사 양성 판정시, 이동제한 지속 및 3주 후 재검사(임상/혈청/항원/환경)

구제역 검사 및 이동제한 해제 절차도(소)

